

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명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3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29.

발의자 : 김명연 · 염동열 · 이양수  
김도읍 · 김규환 · 김정재  
이명수 · 박명재 · 민경욱  
홍철호 · 임이자 · 이우현  
윤종필 · 김기선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사용되는 긴급차량으로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바, 현행 법에서는 이러한 긴급차량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응급환자의 이송 등 법정 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용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러나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,300건에 달하고, 일부 구급차의 경우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

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구급 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) ① · ②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45조(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</u> <u>구청장은 구급차의 제1항에 따</u> <u>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</u> <u>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</u> <u>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</u> <u>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</u> <u>다.</u>